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이전에 수감되었던 뉴욕 주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감소시키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 법안에 서명

*법안(S.294-A/A.2573-A)을 통해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사유지 신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법안(S.2803/A.5707)을 통해 개인이 가석방을 위반하지 않고 선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법안(S.2630/A.5549)을 통해 조기 석방 시 선행 증명서 교부*

*법안(S.2801-A/A.5705-A)을 통해 보호 관찰 대상자가 노동 관련 업무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전에 수감되었던 뉴욕 주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 사법 제도 개혁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사유지 신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전에 수감되었던 개인이 가석방을 위반하지 않고 선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조기 석방 시 선행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허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보호 관찰 대상자가 노동 관련 업무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뉴욕주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형사 사법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균형잡힌 공공 안전 접근법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수감되었던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기회를 증가시켜 더 공정한 형사 사법 제도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의 접근법에는 주 및 지역 기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는 수감 이력이 있는 개인, 특히 유색인종 주민이 사회에 대한 빛을 갠 이후에도 그들의 기본 권리를 박탈해 왔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는 뉴욕의 형사 사법 제도를 통해 모든 주민을 공평하게 대하며 동시에 우리 이웃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감 이력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한 뉴욕주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부동산 신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S.294-A/A.2573-A)**

이 법안은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 복역을 완료한 뉴욕 주민이 가문 사유지 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의 유언에 따라 집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유지의 신탁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의 유죄 판결이 사기 또는 횡령과 연관되었거나 해당 범죄가 국가의 복지를 침해하는 사건인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 개인이 신탁자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법원에서 계속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사적인 재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탁자를 선택하며, 해당 개인의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신탁자 또는 신탁 관리자를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주민이 범죄 이력에 상관없이 중요한 가족 결정 사항을 위임받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저는 수감 이력이 있는 뉴욕 주민의 사회 및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 및 기타 조치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Charles D. Fa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법안(A.2573-A)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서명하고 뉴욕 주민이 과거 재량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유지 신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범죄 이력이 가족의 유산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가석방을 위반하지 않고 선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S.2803/A.5707)**

이 법안은 재취업 노동자가 가석방을 위반하지 않고도 추가 근무 또는 야간 근무 등 선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노동자가 통행금지 금지 시간 동안 선의의 업무에 참여하고 이동하는 것을 가석방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가 노동 관련 업무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S.2801-A/A.5705-A)**

이 법안은 다양한 종류의 보호 관찰 대상자가 노동 관련 업무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호 관찰 중인 개인이 노동 관련 업무 환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Jamaal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 제도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모든 곳에서 일하고 있는 뉴욕 주민을 위한 놀라운 승리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운 파트너들의 변함없는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국내 최초의 법안은 재취업자에 대한 커다란 장벽을 제거하고 시위할 권리를 확장하여, 수감 이력이 있는 노동자가 가석방 위반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노동 시위와 선의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뉴욕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재범과 착취 노동의 악순환을 종식 시키는 데 있어 전 미국을 선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소속 지역사회로 복귀한 개인이 의미 있게 노동 인구에 재편입되고, 감옥 생활의 낙인을 극복하며 평등한 노동 기준 및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주 하원의장 Carl E. Heastie, 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주신 Latoya Joyner 하원의원, 상원과 하원의 동료 여러분, 모든 근로자를 대신해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노동계의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atoya Joy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 장벽을 줄여 감옥에서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한 분들을 환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Latoya Joy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에서 삶을 다시 구축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뉴욕의 투자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 및 사회 정의 커뮤니티의 파트너와 협업하여 사법 제도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온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지한 파트너 여러분, 그리고 이 법안을 위해 싸워 준 정부 내 파트너, Heastie 의장과 Bailey 상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조기 석방 시 선행 증명서 교부(S.2630/A.5549)**

이 법안은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뉴욕주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의 획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제 조기 석방 시 선행 감독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증명서는 예비 고용주, 임대인 및 기타 대상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투표권 회복을 증빙하기 위해 지역 선거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감 이력이 있는 주민이 석방 후 3~5년을 기다려야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들은 감독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가석방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James Sanders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수감이 종료된 뉴욕 주민들은 선행 및 제한 구제에 의한 출소 증명서를 더 빨리 발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여 생산적인 시민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Gary LaBarbera**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가석방 위반의 위협에서 벗어나 노동하고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이 법안은 수감 이력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뉴욕의 형사 사법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듭니다. 초과 근무 또는 야간 근무 중 선의의 업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수감 이력이 있는 뉴욕 주민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노동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규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법안을 지지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 법안을 법제화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